

발행인: 서울특별시청 정 상 천

편 집: 문화공보관 박 종 우

전화 75-7834

인 색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화 75-6090

제 797 호

1980. 9. 2

시 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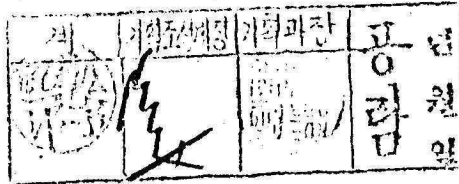
차 레

◎ 조 레

제 1458 호: 서울특별시도시가스공급조례 개정조례 3

◎ 공 고

제 277 호: KS 표시정지처분공고 8

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서울특별시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할 연은 서울특별시 도시가스공급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정상천 인

1980년 9월 2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458 호

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조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가스사업법 및 그 부속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(이하 "가스"라 한다) 사업소가 생산 공급하는 가스의 시설비 부담, 가스사용료, 안전관리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공급지역) ①서울특별시장 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실제로 가스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가스생산량의 증감이 있을시 마다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일부

지역에 대하여도 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.

제 3 조 (사용신청 및 비용부담등)

①제 2 조의 가스공급 대상지역에서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자는 가스사업소장 (이하 "소장"이라 한다)에게 가스사용공사신청서 (별지 제 1호서식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소장은 제 1 항의 신청을 승인할 때에는 공사에정일과 다음 각호의 비용부담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 이경우 건축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준공예정일까지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1. 본관 및 공급관에 대한 시설 부담금 : 50,000 원

2. 가스사용공사와 설계수수료 : 2,000 원 (신청서에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함)

3. 옥외내관, 가스메타기 및 옥내내관의 공사비 : 재고비, 운반비, 도로복구비, 인건비등을 합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공사비 기준액.

4. 임시공급관설치비 : 예산사정과 지역개발 미진등으로 그 지역에 적정 공급관을 매설하기 곤란하여 임시공급관을 매설할 때에는 그 공사비를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.

③미리 받은 옥외내관, 가스메타기 및 옥내내관 공사비는 준공후 이를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.

④본관에서 옥외내관에 이르는 가스메타기까지의 공급시설을 일체는 서울특별시 소유로하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감실된 시설물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.

제 4 조 (사용자의 중지, 폐지신고 및 중지해제) ①가스사용자가 가스사용을 1개월이상 중지하고자 할 경우 또는 시설의 폐지를 원할 경우에는 소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중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가스사용자가 가스공급의 중지를 해제받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제신고와 동시에 1,400원의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수료는 해제신청신고서에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입한다.

제 5 조 (공급의정지 및 시설의폐지 및 정지해제) ①소장은 가스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가스의 공급을 정지할 수 있다.

1. 가스사용의 중지신고 없이 장기간타동으로 가스사용량의 점침 및 사용량 징수가 곤란하거나

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
2. 사용료 및 기타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

②소장은 가스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였을 때는 가스공급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.

1. 사용자가 신고없이 6개월이상 가스공급을 받지 아니한 때
2. 제 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6개월이상 중지기간이 경과하고도 사용신고나 연기신고가 없을 때

3. 가스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때

4. 소장의 승인없이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임의로 증폐 및 시설을 하였을 때

③제 1 항의 정지해제의 경우는 제 4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6 조 (공급지역의 제한) ①소장은 가스공급공사,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급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스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제한지역을 사전에 공고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제 1 항의 결과 가스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지라도 소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 7 조 (가 스 의 열 량 등) 소 장 이 공 급 하 는 가 스 의 표 준 열 량 , 압 력 , 연 소 성 은 다 음 각 호 와 같 다 .

1 . 열 량 (온 도 0 ℃ , 압 력 1 기 압 하 에 서 건 조 한 가 스 1 m³ 당 열 량 을 의 미 한 다) 은 표 준 열 량 을 7,000 Kcal , 최 저 열 량 을 6,800 Kcal

2 . 압 력 (연 소 기 콕 크 에 서 의 가 스 압 력 을 게 이 지 압 력 으 로 표 시 한 것 을 말 한 다) 은 최 고 300 mm / AG , 최 저 100 mm / AG

3 . 연 소 성 은 최 고 WOBBE 지 수

7,800 , 최 저 WOBBE 지 수 7,200

제 8 조 (가 스 사 용 료) ① 소 장 은 가 스 제 량 기 의 검 칩 을 격 월 로 실 시 한 다 .

② 가 스 사 용 료 는 1 개 의 제 량 기 에 검 칩 일 을 기 준 으 로 한 1 개 월 을 단 위 로 하 여 다 음 표 에 정 하 는 기 본 요 금 , 초 과 사 용 요 금 및 용 구 손 료 를 합 산 한 가 액 으 로 한 다 . 다 만 , 용 구 손 료 는 가 스 를 사 용 하 지 아 니 한 경 우 에 도 , 매 월 납 입 하 여 야 한 다 .

가 스 사 용 료		용 구 손 료 (가 스 메 타 기)
기 본 요 금	초 과 사 용 요 금	
2,400 원 (10 m ³)	11 m ³ - 25 m ³ 까 지 : 240 원 / m ³ 26 m ³ 이 상 : 300 원 / m ³	350 원

③ 제 2 항 의 기 본 요 금 에 있 어 서 다 음 각 호 의 1 에 해 당 하 는 사 유 로 인 하 여 가 스 사 용 량 이 기 본 량 에 미 달 할 때 에 는 제 측 에 의 한 심 사 용 량 에 해 당 되 는 요 금 을 징 수 한 다 .

1 . 제 4 조 및 제 5 조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한 가 스 공 급 의 중 지 및 정 치 로 인 하 여 사 용 기 간 이 월 중 10 일 을 초 과 하 지 아 니 한 때
2 . 제 6 조 의 규 정 에 의 한 가 스 공 급 제 한 으 로 가 스 사 용 자 가 월 중 10 일 이 상 가 스 를 사 용 할 수 없 는 경 우

제 9 조 (가 스 사 용 자 의 안 전 관 리)

① 가 스 사 용 자 는 가 스 의 안 전 관 리 를 위 하 여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소 장 에 게 신 고 하 여 야 한 다 .

1 . 가 스 누 기 를 감 지 아 였 을 때
2 . 가 스 사 용 량 이 시 간 당 15,000 Kcal 이 상 일 때 .

3 . 가 스 를 공 급 받 는 건 축 물 의 소 유 권 을 이 전 받 을 경 우 그 이 전 일 로 부 터 20 일 이 내

② 사 용 자 는 선 량 한 관 리 자 의 주 의 로 서 위 해 가 발 생 하 지 아 니 하 도 록 가 스 공 급 시 설 등 을 관 리 하 여 야 하 며

그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가스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.

③가스사용자는 그의 가족, 고용인, 동거인등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.

제 10 조 (안전점검 및 사용시설의 유지관리) ①소장은 가스사용시설 (옥내내관, 실내관 및 연소기구를 말한다) 의 안전점검을 2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점검업무를 위탁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용량검침은 안전점검과 병행실시할 수 있다.

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는 이를 기록, 보존하여야 하며, 점검결과 위해가 예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가스사용시설의 설치, 수리, 개조 등 유지관리는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제 11 조 (공급시설의 위치변경) ①소장은 타인이 시행하는 도로공사등으로 가스공급시설의 위치변경 또는 노후관 교체등이 필요한 때에는 이태관계인의 신청없이 변경 또는

교체할 수 있다.

②제 1 항의 공급시설의 위치변경및 교체등의 비용은 원인행위자 부담으로 한다.

제 12 조 (관리의무의 승계) ①가스사용장치는 그 설치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되며, 그 취득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.

②소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의무를 승계 취득한자에 대하여 그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.

제 13 조 (과태료) ①소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 배 이내의 과태료를 가할 수 있다.

②소장의 승인없이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설치하거나 가스계량기를 통하지 아니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.

제 14 조 (채납가산금) 가스사용료, 비용부담금, 기타 이 조례에 의한 징수금을 납기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납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

제 15 조 (지방세 징수의예) 이 조례에 의한 각종 징수금에 대한 채납처분, 결손처분, 과오납금처리, 시효

소멸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.

제 16 조 (이의신청) ①가스사용료, 비용부담금 기타 이조례에 의한 징수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소장은 제 1 항의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.

제 17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(별지제 1 호서식)

가 스 사 용 공 사 신 청 서

주 소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(통 반)
성 명 전 화

본인이 상기 장소에 귀사가 공급하는 가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으로 신청하니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조 건

1. 본인이 설치한 가스공급장치는 이를 일체 시에 기부 채납한다.
2. 가스공사 시공도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를 납부하지 못할시는 공사를 중단하여도 이의가 없다.
3. 공사비를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때는 시설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조례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 압류처분을 행하여도 이의가 없다.
4. 공사비 계산액과 정산은 서울시 공사기준표에 따른다.
5. 공사후 가스를 사용할때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.

198 년 월 일

신청인 성명

(인)

서울특별시 도시가스 사업소장 귀하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277 호

KS 표시정지처분공고

1980.9.2

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규정에 의거

서울특별시 장

허가번호	제 1002 호
허가일자	1979.12.20
제조업체명	(주)신명전기
대표자	김 회 복
소재지	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5 가 46
규격번호	KSC 4204
품 명	단상유도전동기
종 류 등 급	100/220 V 4 극 B종 60 Hz 권선식 기동형 개방형 0.4kw
처분기간	처분일로부터 3 개월
처분일자	80.9.2
처분사유	KS 규격미달

아래와 같이 KS (한국공업규격)
표시 정지 처분하였기 동법 시행
규칙 제 21 조 규정에 따라 이를
공고한다.